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중 방문요양급여 이용(제공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 - ※ 서비스 제공 중 일시적인 병원입원,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익 월 급여내용등록이 불확실 할 경우는 일시해지 후 재요청이 발생 시 동 계약일자로 재등록하고 계약기간만 재요청시점부터 ①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급여범위)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‘갑’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.
- ② ‘갑’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구분	이 용 일	이 용 시 간
이용 시간 (1)	<div> <div>■</div> <div>■</div> <div>■</div> <div>■</div> <div>■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월</div> <div>화</div> <div>수</div> <div>목</div> <div>금</div> <div>토</div> <div>일</div> </div>	<div> <div>■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오전</div> <div>오후</div> </div> <div>시 분</div> <div>~</div> <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오전</div> <div>오후</div> </div> <div>시 분</div>
이용 시간 (2)	<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월</div> <div>화</div> <div>수</div> <div>목</div> <div>금</div> <div>토</div> <div>일</div> </div>	<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오전</div> <div>오후</div> </div> <div>시 분</div> <div>~</div> <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오전</div> <div>오후</div> </div> <div>시 분</div>
이용 시간 (3)	<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월</div> <div>화</div> <div>수</div> <div>목</div> <div>금</div> <div>토</div> <div>일</div> </div>	<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오전</div> <div>오후</div> </div> <div>시 분</div> <div>~</div> <div> <div>□</div> <div>□</div> </div> <div> <div>오전</div> <div>오후</div> </div> <div>시 분</div>

※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‘을’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- ③ ‘을’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일	비고
이용시간1								※이용시간 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
이용시간2								

- ④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30%의

5. 기타 ‘을’의 협조요청 이행

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2.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3.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4. 기타 ‘갑’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‘을’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을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2. ‘갑’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3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4. ‘갑’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6. ‘갑’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 7. 기타 ‘갑’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‘갑’(또는‘병’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‘을’에게 통보한다.
- ② ‘을’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‘갑’과 ‘병’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- ③ ‘을’은 ‘갑’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가 특별한 사유 없이 미납되는 경우 직접방문, 우편, 유선 등으로 독촉할 수 있으며, 이는 제6조2항7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중단됨을 ‘갑’(또는‘병’)에게 즉시통보 한다.

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‘별표1’과 같다.
- ② ‘을’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 이후에 정산하여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이용료를 납부할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부분을 직접 또는 전산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며, 제공방법은 위 제4조 7과 같다.
- ③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매월 이용료를 ‘을’이 지정한 계좌이체/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 현금 수납인 경우 ‘을’은 현금 수령 즉시 ‘갑’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.

■ 현금영수증, 신분확인 및 승인번호 :

■ 본인부담금 납입계좌 :

④ ‘을’은 ‘갑’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.

제9조(재계약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'갑'(또는'병')의 요청으로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
※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(약식)으로 작성 할 수 있다.
4. 기타 ‘갑’과 ‘을’이 필요한 경우

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‘갑’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1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‘을’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‘을’은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‘갑’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‘을’은 ‘갑’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 수 있으며, 수집 된 자료는 '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와 지자체'에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다.(단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의 요청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.)
- ④ ‘을’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갑’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3조(기록 및 공개)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배상책임)

- ① ‘을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 - 1. 장기요양요원이(또는 ‘을’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이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- 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 - 2. 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-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- 4. ‘갑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5조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‘갑’(또는 ‘병’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■ 장기요양요원 개인차량 이용 중 사건·사고 ■

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, 관리자 등)의 개인차량 이용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무관합니다.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개인차량 이용 시 발생된 사건·사고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갑의 보호자, 친척 등’은 ‘을’ 또는 ‘을’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에게 배상책임 및 금전적인 요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